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48호
2025년 2월 24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3 6 1 호 보상계획 열람 공과수현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도로 과 2
- 공 고 제 4 0 4 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 생 교 육 과 6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 시

- 고 시 제 2 4 호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총 무 과 2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36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25. 2. 24.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남동구청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5-9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수현지구 소로2-1호선)
 - 명칭 : 수현지구 소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
 - $B=8.0m$, $L=140.0m$, $A=1,144.9m^2$
5. 보상시기 : 2025. 2월(예정) ~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도로과
7. 보상대상
 - 토지 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355-9번지 일대 12필지
 - 지장물 보상 : 도로개설 구간에 위치한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 체결 후 현금 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25. 02. 24. ~ 2025. 03. 10.

11.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기간 : 2025. 03. 11. ~ 2025. 04. 09.
- ②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도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로과에 문의(☎032-453-2714)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목록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소	지번			도로	법면	계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장수동	751-33	도	4.4	4.4		4.4	국(건설부)		1				
2	장수동	751-36	도	21.0	21.0		21.0	국(건설부)		1				
3	장수동	751-30	도	190.7	190.7		190.7	국(건설부)		1				
4	장수동	355-7	전	52.2	52.2		52.2	국(국방부)		1				
5	장수동	355-9	도	80.0	80.0		80.0	국(국방부)		1				
6	장수동	398-2	도	38.0	38.0		38.0	인천광역시		1/2				
								남동구		1/2				
7	장수동	356-6	답	34.3	34.3		34.3	차*철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	1	김*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_* , ***동 ***호	상속인	
											차*준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무들로 **_* , ***동 ***호	상속인	
8	장수동	356-8	도	38.0	38.0		38.0	차*철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	1	김*경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_* , ***동 ***호	상속인	
											차*준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무들로 **_* , ***동 ***호	상속인	
9	장수동	356-7	도	251.0	251.0		251.0	오*섭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 **	1				
10	장수동	398-13	전	7.0	7.0		7.0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2번길 * , *층	1	부평****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	
11	장수동	398-14	전	8.0	8.0		8.0	장*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2번길 * , *층	1	부평****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근저당권	
12	장수동	394-8	전	4.0	4.0		4.0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1번길 ** , *동 ***호	1				
총 계					728.6		728.6							

■ 지장물목록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장 물 현 황						관 계 인			비 고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및 수량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장수동	356-2	웬스	H=1.8m, L=3m	식	1	민*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골길125번길 **_*				
2	장수동	356-8	간판		개	1	이*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				
3	장수동	399-2	웬스	H=0.8m, L=10m	식	1	송*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2번길 **				
4	장수동	399-2	웬스	H=0.8m, L=2m	식	1	송*만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2번길 **				
5	장수동	399-2	돌 쌓기	6.6㎡	식	1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_*				
6	장수동	399-2	간판		개	1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4번길 **_*				
7	장수동	751-30	웬스	H=1.5m, L=2m	식	1	오*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11번길 **, *동 ***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404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2. 2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명 변경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규정 : 안 제4조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 제8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 안 제10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
- 준용 규정 :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평생교육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만수동),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 연 락 처 : ☎ 453-5891, FAX 453-5899
- 남동구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 입법예고)

4. 개정조례안 : 별첨. 끝.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법」 등에 따른 학교급식지원 관련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전)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후)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 안 제1조~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방법 규정 : 안 제4조~제6조
-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7조, 제8조
-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안 제9조
- 지원대상자의 의무 규정 : 안 제10조
-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 : 안 제11조
- 준용 규정 :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 「유아교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 「축산법」 제35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9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 「교육기본법」 제8조
-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동구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며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하여 품질이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물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및 특산물

4. “친환경 농·수·축산물 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 지원대상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 중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및 시설의 총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경비·우수 식재료 사용 시 필요한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인천광역시 및 교육감·구청장이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원 방법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남동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관할 교육지원청 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 의회 의원

나.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사

라.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친환경 농업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학교급식 또는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학교급식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단, 구체적 지원 기준에 의한 국비·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규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위원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9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동구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매년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급식경비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

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식재료의 구매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

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어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대상품목·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법

제35조(축산물의 등급판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2호 중략)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하 생략)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생산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표시방법·신청절차,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내용·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인천광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이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 식품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건강·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급식경비 중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식재료”란 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안전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과 수산특산물

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된 축산가공품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바.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

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특산물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사전협약 등의 방식으로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 등의 기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군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
2. 무상급식 지원예산에 대한 기관별 재정분담방안
3.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우수 식재료의 공급관리방안
4. 인천광역시 센터 설치·운영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감,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장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이나 지원현물을 지급받은 학교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등의 장은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지원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다.

② 시장은 인천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우수 식재료 중에서 친환경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규모와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
3.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상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급식업무 담당 본부장 또는 국장, 급식업무 담당과장, 시 교육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나. 인천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마.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및 농어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바.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사.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전문가
 -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산지, 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관찰·점검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2. 무상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3. 학교와 연계한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4.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
 5. 무상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 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6.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친환경식재료 등의 가공시설, 검수·검사시

설, 물류창고, 교육시설 등 부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운영하거나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구별로 설치되는 센터는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장은 운영현황을 시장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등의 장에게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등의 장이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및 지원현물의 지급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지원현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등의 장에게 회수할 지원현물이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5-24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 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5. 2. 24.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분서 참조”

2025. 2. 24.

남 동 구 청 장

[첨부]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내역

1 통 · 반 조정 내역

○ 총괄내역 : 1개통 감소, 1개반 증가

구 분	조 정 전		증 감		조 정 후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882	3,747	△1	+1	881	3,748
만수1동	44	176	△1	-	43	176
만수5동	33	184	-	+1	33	185

○ 만수1동

조 정 전		
통	반	세대수
10통	4개반	238
11통	5개반	236
12통	4개반	183

⇒

조 정 후		
통	반	세대수
10통	5개반	294
12통	8개반	363

○ 만수5동

조 정 전		
통	반	세대수
2통	4개반	113
5통	5개반	209
6통	4개반	255
30통	5개반	197

⇒

조 정 후			비고
통	반	세대수	
2통	4개반	194	
5통	5개반	196	
6통	4개반	267	오피스텔(113세대) 입주예정 포함
30통	6개반	229	1개반 증가

2

통 · 반 조정 현황

○ 만수1동

조 정 전		
통	반	관할구역
10	1	삼환아파트 201동 1호~4호라인
	2	삼환아파트 201동 5호~8호라인
	3	삼환아파트 201동 9호~12호라인
	4	삼환아파트 202동 101호~1504호
11	1	삼환아파트 204동 101호~1504호
	2	삼환아파트 203동 1호~4호라인
	3	삼환아파트 203동 5호~8호라인
	4	삼환아파트 203동 109호~112호, 209호~212호, 309호~312호, 409호~412호, 509호~512호, 609호~612호, 709호~712호, 809호~812호
	5	삼환아파트 203동 909호~912호, 1009호~1012호, 1109호~1112호, 1209호~1212호, 1309호~1312호, 1409호~1412호, 1509호~1512호
12	1	삼환아파트 205동 1호~4호라인
	2	삼환아파트 205동 5호~8호라인
	3	만수동 삼환아파트 205동 109호~112호, 209호~212호, 309호~312호, 409호~412호, 509호~512호, 609호~612호, 709호~712호, 809호~812호
	4	삼환아파트 205동 909호~912호, 1009호~912호, 1109호~1112호, 1209호~1212호, 1309호~1312호, 1409호~1412호, 1509호~1512호



조 정 후		
통	반	관할구역
10	1	삼환아파트 201동 1호~4호라인
	2	삼환아파트 201동 5호~8호라인
	3	삼환아파트 201동 9호~12호라인
	4	삼환아파트 202동 101호~1504호
	5	삼환아파트 204동 101호~1504호
12	1	삼환아파트 205동 1호~4호라인
	2	삼환아파트 205동 5호~8호라인
	3	삼환아파트 205동 109호~112호, 209호~212호, 309호~312호, 409호~412호, 509호~512호, 609호~612호, 709호~712호, 809호~812호
	4	삼환아파트 205동 909호~912호, 1009호~912호, 1109호~1112호, 1209호~1212호, 1309호~1312호, 1409호~1412호, 1509호~1512호
	5	삼환아파트 203동 1호~4호라인
	6	삼환아파트 203동 5호~8호라인
	7	삼환아파트 203동 109호~112호, 209호~212호, 309호~312호, 409호~412호, 509호~512호, 609호~612호, 709호~712호, 809호~812호
	8	삼환아파트 203동 909호~912호, 1009호~1012호, 1109호~1112호, 1209호~1212호, 1309호~1312호, 1409호~1412호, 1509호~1512호

※ 11통 폐지

○ 만수5동

현행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2	소 계		113
	1	만경로12번길 1,3,3-1,7,7-1,9,9-1, 13,13-1,15,15-1,19	35
	2	만경로18번길 2,4,6,10,12,12-1	49
	3	만경로18번길 14,16,18,20 백범로169번길 20	27
	4	만경로28번길 24	2
5	소 계		209
	1	만경로 12 만경로12번길 6,8,12,14,20,22,22-1,24 백범로169번길 32	68
	2	만경로8번길 12,12-1,13,13-1,13-2,14,14-1,15,16, 16-1,18,18-1,21,22 만경로4번길 13,13-1,15-1 백범로169번길 42	38
	3	만경로 6, 10 만경로8번길 3,5,6,7,8,9,10	46
	4	만경로 4 만경로4번길 3,5,7	24
	5	구월로 327,329,331,333,335,337 만경로4번길 9,11	33
6	소 계		255
	1	구월로 311,317,319,319-1,319-2,321,323 구월말로80번길 18, 18-1, 22,24,26,28,30 만경로 3	89
	2	구월말로80번길19-6,19-8,19-10, 19-12,21,25,27,31 구월말로86번길 28 만경로 9,11	71
	3	구월말로80번길 9-4 구월말로86번길 14,16,24-12	47
	4	구월말로 82-2,82-4 구월말로80번길 1,5,11,13,17,9-3,9-5 19-5,19-7 구월말로86번길 20,24,24-15,24-5,24-7,24-9	48
30	소 계		19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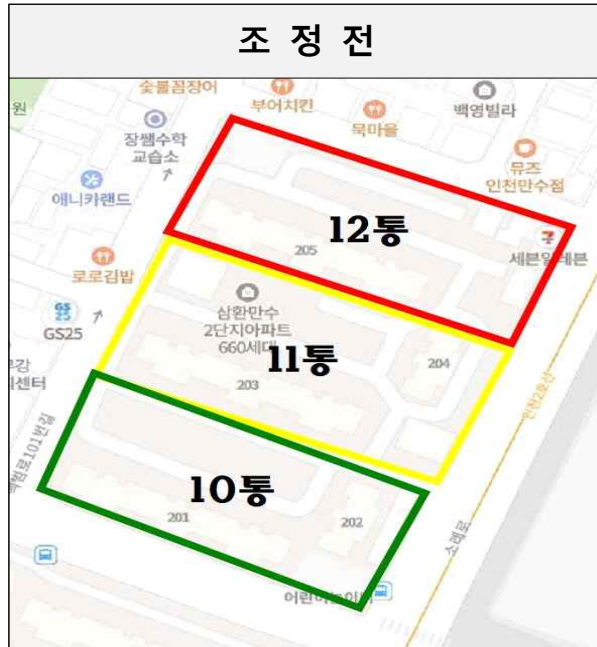


조정후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2	소 계		194
	1	만경로10,12 만경로12번길 6,8 만경로8번길 3,5,7	46
	2	만경로12번길 1,3,3-1,7,7-1,9,9-1, 13,13-1,15,15-1,19 만경로18번길 2,4,6,10	71
	3	만경로12번길 12,14 만경로8번길 13,13-1,13-2 만경로8번길 9	35
	4	만경로28번길 24 만경로18번길 12,12-1,14,16,18,20 백범로169번길 20	42
5	소 계		196
	1	만경로12번길 20,22,22-1,24 백범로169번길 32 만경로8번길 15, 21	25
	2	만경로8번길 12,12-1,14,14-1,16, 16-1,18,18-1,22 백범로169번길 42	19
	3	만경로4,6 만경로8번길 6,8,10 만경로4번길 3,5,7	44
	4	구월로 327,329,331,333,335,337 만경로4번길 9,11,13,13-1,15-1	38
	5	구월로 319-1,319-2,321,323 구월말로80번길 22,24,26,28,30 만경로 3	70
6	소 계		267
	1	구월로311 (좌측구역)	66
	2	구월로311 (우측구역) 구월로317,319 구월말로80번길 18, 18-1	67
	3	구월말로80번길 19-6,19-8,19-10, 19-12,21,25,27,31 구월말로86번길 28 만경로 9,11	71
	4	구월말로80번길 11,13,17,19-5,19-7 구월말로86번길 16,20,24,24-15,24-5,24-7,24-9	63
30	소 계 (1~5반 포함)		229
	6	구월말로 82-2,82-4 구월말로80번길 1,5,9-3,9-5 구월말로80번길 9-4 구월말로86번길 14,24-12	32

3

통·반 조정 구역 지도

○ 만수1동



○ 만수5동



통·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5. 2. 24.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882	3,747	△1	+ 1	881	3,748	
구월1동	51	200	0	0	51	200	
구월2동	48	206	0	0	48	206	
구월3동	62	220	0	0	62	220	
구월4동	36	171	0	0	36	171	
간석1동	37	156	0	0	37	156	
간석2동	35	154	0	0	35	154	
간석3동	54	217	0	0	54	217	
간석4동	46	215	0	0	46	215	
만수1동	44	176	△1	0	43	176	
만수2동	42	157	0	0	42	157	
만수3동	39	132	0	0	39	132	
만수4동	42	211	0	0	42	211	
만수5동	33	184	0	+ 1	33	185	
만수6동	41	185	0	0	41	185	
장수서창동	32	121	0	0	32	121	
서창2동	53	183	0	0	53	183	
남촌도림동	44	193	0	0	44	193	
논현1동	48	254	0	0	48	254	
논현2동	49	221	0	0	49	221	
논현고잔동	46	191	0	0	46	191	